#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관리 규정

제정 2022. 6. 1.,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112호

#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데이터의 생산, 수집,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빅데이터"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, 문자,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 출한 가치,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.
- 2. "데이터품질"이란 데이터의 최신성, 정확성,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.
- 3. "데이터품질관리"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, 정책 및 조직의 구성,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, 데이터 표준화,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, 품질진단 및 개선, 데이터 정비,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4. "데이터관리부서"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 기관에서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.
- 5. "가명정보"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 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

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.

- 6. "데이터 전문기관"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의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(이하 "장관"이라 한다)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7. "데이터기반행정"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수집·저장· 가공·분석·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 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 공기관("이하 소속기관 등"이라 한다)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산·수집·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한다.

## 제2장 데이터의 종합·조정 및 운영체계

- 제4조(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) ① 장관은 공공데이터, 빅데이터, 통계기초자료(이하 "데이터 등"이라 한다)의 수집·분석 및 활용,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둔다.
  - 1. 데이터 등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
  - 2. 데이터 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· 계획 등과의 연계 · 조정
  - 3. 데이터 등의 관리·수집·저장·분석·제공·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
  - 4. 데이터 등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사무
  - 5. 데이터 등의 수집·저장·분석·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및 품질 관리, 평가
  - 6. 데이터 등의 개방·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

- 7. 가명정보의 제공 및 가명처리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
- 8. 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・취소, 관리・감독 등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사무
-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,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을 겸한다.
- ③ 고객정보화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데이터 총괄책임관을 보좌한다.
- ④ 소속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수집·분석 및 활용,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,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.
- 제5조(데이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법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데이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.
  - 1. 데이터 등의 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데이터 등의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· 점검에 관한 사항
  - 3.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 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
  - 4.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,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
  - 5. 데이터 등의 활용과 제공,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,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
  - 6.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신청하는 데이터 등 업무의 조정 사항

- 7. 가명정보의 제공 및 가명처리 기준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- 8. 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・취소 등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
- 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  - 1. 고객정보화담당관
  - 2. 본부 실・국 주무과장
  - 3. 소속기관 등의 데이터책임관
  - 4. 전문가, 교수 등 데이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  -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고객정보화담당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  -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  -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⑦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제7조(데이터 업무 조정)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데이터 연계활용 또는 중복데이터 구축, 표준화,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대

- 한 사항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 및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된 다른 부서의 장 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 · 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

- 제8조(데이터 기반 시스템)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수집· 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(이하 "기반시스템"이라 한다) 등을 구축·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기반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데이터 등의 연계 및 통합 관리
  - 2. 데이터 등을 이용한 과학적 행정지원
  - 3. 데이터 수집 · 분석 · 유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
  - 4.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통 기능 제공
  - 5. 가명정보 단일 창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기능 등
  -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등의 분석에 기반시스템 분석 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데이터 등의 수집·관리)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 등을 생성 ·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공기관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소관부 서"라 한다)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기반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 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-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

- 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관부서 등에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, 「저작권법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빅데이터 플랫폼)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서 지정하거나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소관 분야 데이터 플랫폼 (이하 "플랫폼"이라 한다)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스템과 플랫폼 간의 상호연동을 통해 중소 벤처 전 분야의 데이터가 융합·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플랫폼의 정책활용 증대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선도사업 발굴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④ 장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 및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관역할 지정, 조직체계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11조(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)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에 대해 고객정보화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
  - ③ 가명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2조(공공데이터 품질관리)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필요시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보유한 공공데

- 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1. 데이터값 오류
- 2. 데이터 구조 및 성능
- 3. 데이터 표준 준수
- 4.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
- 5.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
-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데이터총괄책임관과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표준을 구축된 메타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데이터총괄책임관과 데이터책임관은 품질 오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, 접수된 오류 사항을 10일 이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) ① 장관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③ 장관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장관은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데이터 실무협의회

- 제14조(협의회 설치)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의 구축·관리·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·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속으로 데이터실무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- 제15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③ 회장은 고객정보화담당관이 되며, 간사는 데이터담당 사무관이 된다.
  - ④ 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  - 1. 데이터관리부서의 장과 업무담당자
  - 2.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업무담당자
  - ⑤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 - ⑥ 협의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구 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6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  - 1. 데이터 등 업무의 종합·조정에 관한 사항
  - 2. 데이터 구축 표준화에 관한 사항
  - 3. 데이터 등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
- 제17조(의견의 청취)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
# 제5장 실태조사와 평가 등 처리

- 제18조(실태조사)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관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- 제19조(평가) ① 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.
  - ② 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기업·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제20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